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사회보장급여의이용·제공및
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
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은경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위기가구의 조기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, 보장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나 신용보증·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, 변제계획을 일정 기간 이상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, 불법사금융업자·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 중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가구정보와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6. 7. 15. ~ 8. 2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마목 중 “수도사업자”를 “수도사업자(이하 “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”라 한다)”로, “포함한다”를 “포함한다. 이하 제5호더목에서 같다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바목 중 “같은 법 제24조제1항제4호”를 “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나 같은 항 제4호”로, “자금대출의 신청이 거절된”을 “자금대출을 신청한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: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후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간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

아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: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불법사
금융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

별표 2 제5호에 더목을 러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
설한다.

더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지방자치단
체인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가정용 수도 사용량
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144